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- 1092호

「조경설계기준(KDS 34 00 00)」 및 「조경공사 표준시방서(KCS 34 00 00)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조경설계기준(KDS 34 00 00)」 및 「조경공사 표준시방서(KCS 34 00 00)」 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건설기준 마련을 위한 조경 수경시설 건설기준 (KDS/KCS 34 50 35) 검증연구 수행 결과와 최신 건설기술, 사회적 수요 및 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조경분야 건설기준 72개 코드 정비 연구 수행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(코드 개정) 조경공간의 품질 향상, 건설기준 코드 매칭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조경 설계기준·조경공사 표준시방서 70개 코드 검토 및 개정(안) 마련

- 조경 건설기준 체계의 정합성 검토 및 중복·상충·오류·누락 검토
- 나. (코드 제정) 최신건설기술 및 사회적 수요·이슈를 반영하기 위한 조경 설계기준 2개 코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개 코드 제정
- 조경 건설기준 체계의 정합성 검토 및 중복·상충·오류·누락 검토
- 다. (코드 폐지) 기존 건설기준의 적용범위 수정 및 통합을 위한 조경 설계기준 2개 코드 폐지

3. 의견제출
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 8. 1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국토교통부장관(녹색도시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(☎ 044-201-3754, fax 044-201-5574)
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